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내부보안심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일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행위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 대상 추가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5 개정)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해양수산분야 경력 3년과 보안 관련 경력 1년’을 7급 이상의 공무원까지 확대

나. 내부보안심사자 변경 지정 시 통보 의무화(안 제44조, 제23호의2 서식 개정)

기존 내부보안심사자 지정시에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변경 시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도록 함

다.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 등 허가절차 간소화(안 제40조의2 개정)

해당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이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

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보완(안 제29조 개정)

항만보안 공백이 없도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포함사항에 제한구역의 설정, 교육·훈련, 보안장비의 유지·관리를 명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만시설 내의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등 제한구역의 관리

10.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훈련

13.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제40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촬영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후에 그 검토결과를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부보안심사자를 변경 지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5 나목3)가) 및 나) 외의 부분 및 같은 3) 나) 중 “5급”을 각각 “7급”
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변경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항만시설소유자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직 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내부보안심사자

대상 항만시설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 위	생년월일	팩스번호	전자우편

내부보안심사자 변경내용 및 자격요건 확인

현행	성명		직위(직급)		지정일자	
변경	성명		직위(직급)		지정일자	
	자격요건		경력요건		적격여부	
			전문지식요건		적격여부	
			이해관계 여부		적격 또는 사유	

< 비 고 >

1.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항만시설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준용한다.
2.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변경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u><신 설></u> 3. ~ 8. (생략) <u><신 설></u> 9. · 10. (생략) <u><신 설></u> 11. ~ 14. (생략) ② · ③ (생략)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항만시설 내의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등 제한구역의 관리</u> 4. ~ 9.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10. <u>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훈련</u> 11. · 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13. <u>보안장비의 유지·관리</u> 14. ~ 17.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 또는 배포행위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 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허가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촬영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그 검토결과를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내부보안심사자

	를 변경 지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	---------------------